

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(안)

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9조(점검 종류) (안전점검 등 수행방법)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수행방법은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」 제8조부터 제12조에 따른다.

제30조(점검 시기) 제30조(안전점검 등 실시시기) 공동구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는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부터 제13조에 따른다.

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공동구의 점검종류별 점검항목 및 방법은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」 제13장 공동구에 따라 실시한다.

제47조 중 “2016년 1월 1일”을 “2019년 1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9조(점검 종류) 점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기점검 :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와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 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심한 외관 조사 수준으로 실시하는 점검 2. 정밀점검 :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·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하는 점검 3. 긴급점검 : 태풍, 집중호우, 폭설 등의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손상이 발견되거나 공동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모든 점검.(필요한 경우에는 장비나 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실시한다) 4. 정밀안전진단 : 정밀한 외관조사와 시험·측정장비 및 기기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물리적·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·분석·평가하고 보수·보강방법을 제시하는 점검 <p>제30조(점검 시기) 점검 종류별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정기점검 :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. 다만, 해당 반기에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생략할 수 있다. 	<p>제29조(안전점검 등 수행방법) <u>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수행방법은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」 제8조부터 제12조에 따른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(삭 제) <p>제30조(안전점검 등 실시시기) <u>공동구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는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부터 제13조에 따른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4. (삭 제)

2. 정밀점검 : 전 회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 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.

3. 긴급점검 : 공동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동구관리자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시기에 실시한다.

4. 정밀안전진단 : 공동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실시한다.

제31조(점검항목 및 방법) ① 공동구의 점검 종류별 점검항목 및 방법은 「공동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매뉴얼」(이하 이 조에서 "매뉴얼"이라 한다)에 따라 실시한다.

② (생략)

제47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훈령 제334호)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31조(점검항목 및 방법) ① -----

-----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」 제13장 공동구에 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7조(재검토기한) -----

-----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-----

-----.